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 6.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식생활소비정책과)

1. 개정이유

농산물 직거래법이 개정(법률 제21566호, 2026.4.21.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우수한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그 명칭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사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이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우수 사업장을 지정하는 성격이므로 ‘인증’을 ‘지정’으로 전환하여 운영

2. 주요내용

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시행규칙안 제14조, 제17조, 제22조)

나.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시행규칙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협의 중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이하 “인증”)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이하 “지정”)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인증의 신청 등)”을 “(지정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신청서”를 각각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중 “인증심사계획”을 “지정 심사계획”으로, “인증심사의”를 “지정 심사의”로, “인증심사를”을 “지정 심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인증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을 “지정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으로, “인증심사가 완료된 날”을 “지정 심사가 완료된 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인증 기준”을 “지정기준”으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인증 재심사”를 “지정 재심사”로, “인증 재심사 신청서”를 “지정 재심사 신청서”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인증의 변경)”을 “(지정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인증사업자””를 ““지정사업자””로, “인증 변경신고서”를 “지정 변경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 지정서 사본 제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인증사업장”을 각각 “지정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지정사업자”로, “변경인증 신청서”를 “변경지정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사업장 인증서”를 “지정사업장 지정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변경인증”을 각각 “변경지정”으로 한다.

1. 지정사업자

제18조의 제목 “(인증의 갱신)”을 “(재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 갱신”을 “재지정”으로, “인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 갱신”을 “재지정”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인증의 표시)”를 “(지정의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증사업장임”을 “지정사업장임”으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인증의 사후관리)”를 “(지정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사업장의”를 “지정사업장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인증사업장”을 각각 “지정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사업장 조사”를 “지정사업장 조사”로, “인증사업장 방문”을 “지정사업장 방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변경인증”을 “변경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인증사업자”를 “지정사업자”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인증심사 서류의 보관)”을 “(지정심사 서류의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인증사업장”을 각각 “지정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사업장 인증서”를 “지정사업장 지정서”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이하 “지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기관을”을 “지정기관을”로, “인증기관 지정계획”을 “지정기관 지정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으로”를 “지정기관으로”로,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지정기관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인증 업무”를 “지정업무”로 한다.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을”을 “지정기관을”로, “인증 기관 지정서”를 “지정기관 지정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기관”을 “지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업무의”를 “지정업무의”로, “인증업무 규정”을 “지정업무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인증기관”을 각각 “지정기관”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 장 지정 기준) ----- ---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 장의 지정(이하 “지정”----- -----.		
제15조(인증의 신청 등) ① 인증 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 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의 신청 등) ① 지정 을 ----- ----- 지정신 청서-----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에 따른 인증의 기준 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 지정----- -----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 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		② ----- 지정신청서--- ----- ----- ----- ----- -----.		

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제1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인증의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재심사의 신청) ① 법 제2

1. 2. (현행과 같음)

③ -----
----- 지정신청서-----
----- 지정 심사계획-----
----- 지정 심사의 -----
----- 지정 심사
사를 -----.

④ -----
----- 지정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정 심사가 완료된
날-----
-----.

--- 지정기준-----

---- 지정서-----
--.

⑤ ----- 지정-----

-----.

제16조(재심사의 신청) ① -----

2조제4항에 따라 인증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
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인증의 변경) ① 법 제22
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
를 하려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신고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이하 “인증사업장”이라 한다)
인증서 사본

2. (생략)

②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지정 재심사를

----- 지정 재심사 신청서-----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정의 변경) ① -----

-----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지정사업자”-----

----- 지정 변경신고서-----

1.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
지정서 사본

2. (현행과 같음)

② -----

1. 인증사업자

2. 인증사업장 소재지

3. 인증사업장 규모

4. 인증사업장 명칭

③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2.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④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인증의 갱신)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 갱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

1. 지정사업자

2. 지정사업장 ----

3. 지정사업장 --

4. 지정사업장 --

③ -----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지정사업자----- 변경지정 신청서-----

-----.

1. 지정사업장 지정서 --

2. 변경지정-----

④ 변경지정-----

-----.

제18조(재지정) ① -----
----- 재지정-----

----- 지정 신청서-----

-----.

② 재지정-----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인증의 표시) 법 제24조제 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 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 조사(이하 “인증사업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매년 인증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특정 인증사업장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 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류조사 등으로 실시하며, 인증사업장 방문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19조(지정의 표시) -----
----- 지정사업장임-----

----- “지정표시”-----
-----.

제20조(지정의 사후관리) ① ----

----- 지정사업장의 -----
-----지정사업장 -----
-----.

1. ----- 지정사업장 -

--

2. ----- 지정사업장--

② ----- 지정사업장 조
사-----
----- 지정사업장 방문

--.

③ 인증사업장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제14조의 인증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
3.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
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
였는지 여부
4. 인증표시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
사업장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
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21조(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①
(생 략)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관
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인증사업장의 직거래 농

③ 지정사업장 -----
-----.

1. -----
----- 지정-----
2. ----- 지정 -----

3. -----
----- 변경
지정-----
4. 지정표시-----
--

④ ----- 지정사
업장 -----

--- 지정사업자-----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지정심사 서류의 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 지정사업장-----

산물 취급 비중에 관한 서류

나.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출하(판매) 가격에 관한 서류
다.·라. (생략)

2. 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계획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지정사업장-----

다.·라. (현행과 같음)

2. 지정사업장 지정서 --

제22조(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

--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이하 “지정기관”-----

----.

② -----

----- 지정기관을 -

----- 지정기관

지정계획-----

-----.

③ ----- 지정

기관으로 -----

----- 지정기관 지정신청서

-----.

1. ~ 4. (생략) 5. <u>인증업무</u> 규정 ④ (생략)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28조제1항에 따라 <u>인증기관</u>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u>인증기관 지정서</u>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u>인증기관</u>의 명칭 및 대표자 2. (생략) 3. <u>인증업무</u>의 범위 및 <u>인증업무</u> 규정 4. <u>인증기관</u>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28조제3항에 따라 <u>인증기관</u>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u>인증기관</u>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u>지정업무</u>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지정기관</u>을 ----- ----- <u>지정기관 지정서</u>----- ----- ----- ----- -----. 1. <u>지정기관</u>----- 2. (현행과 같음) 3. <u>지정업무</u>의 ----- <u>지정업무</u> 규정 4. <u>지정기관</u>----- -- ⑥ ----- ----- <u>지정기관</u>----- ----- ----- -----. ⑦ ----- <u>지정기관</u>----- ----- ----- -----.
--	--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기준(제14조 관련)

1. 직거래 농산물과 직거래 농산물이 아닌 다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직거래 농산물에 품목별로 생산자의 정보 또는 유통 이력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직거래 농산물임을 알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 직거래 농산물과 직거래 농산물이 아닌 다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직거래 농산물의 취급물량이 직거래 농산물이 아닌 다른 상품의 취급물량보다 많을 것
3. 생산자 및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농산물 도매·소매 가격 정보를 제공할 것
4. 농산물 직거래 취급 수수료율 또는 유통 마진율이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일 것
5. 판매상품에 생산자명, 생산지 주소, 출하(수확)일자 등 상품정보가 표시되어 있을 것
6. 농산물 안전성 관리 매뉴얼을 위반한 농가에 대한 제재 기준을 포함한 농산물 안전성 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을 것
7. 그 밖에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종류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기준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표시(제19조 관련)

1. 표시도형



지정기관명:
지정번호:



Name of Designating Body:
Designation Number:

2. 제도법

가. 도형 표시

- 1) 표시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 \times W$ 의 비율로 한다.
- 2)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times W$ 로 한다.
- 3) 표시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맑은 고딕체 볼드이며,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라. 표시도형 내부의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Good Farmers Market)"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한다.

바. 표시도형의 크기는 주변의 시설물·도안 및 포장재 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사. 표시도형 밑에 지정기관명과 지정번호를 표시한다.

아. 표시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의 지정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분	세부 기준
1. 조직	가. <u>지정</u>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u>지정</u>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재무구조가 건실할 것 나. <u>지정</u>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u>지정</u>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2. 인력	가. 상근 또는 비상근 <u>지정</u> 심사 인력이 5명 이상일 것 나. <u>지정</u> 심사 인력은 농업 관련 기관·연구소·기업체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유통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경험에 있는 사람일 것
3. 시설 및 장비	<u>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u>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 가. 사무실 나. 전산장비
4. <u>지정</u> 업무 규정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u>지정</u> 업무 규정을 갖추는 것 가. <u>지정</u> 사업장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나. <u>지정</u> 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다. <u>지정</u> 심사위원 준수사항 및 <u>지정</u> 심사위원의 자체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라. <u>지정</u> 심사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 마. <u>지정</u>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운영주 체)	신청단위 [] 지자체, [] 법인, [] 단체		
	사업장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참여 농가 수	
	주소 (위치 요약) (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명 : 담당부서: 담당 / 직위: 성명: 전 화 번 호:		
신청내용	신청구분 [] 최초 지정 신청, [] 재지정 신청		
	지정구분 [] 농산물 직매장 [] 농산물 직거래 장터 []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주요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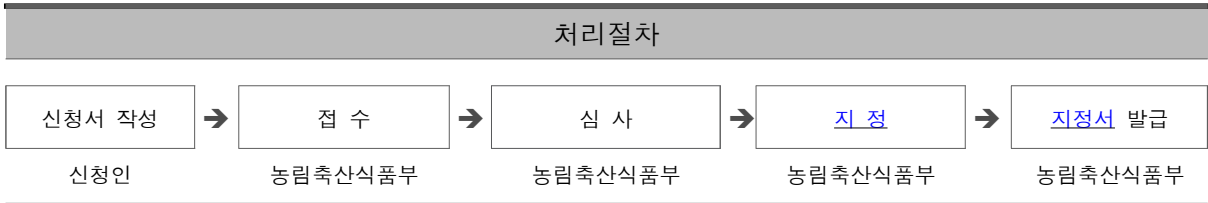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 규칙 제14조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지정 번호: 제 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서

<u>지정</u> 구분		유효기간	~
사업장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성명		참여농가 수	
사업장 소재지			
주요 품목		사업장 규모	
<u>지정</u> 부가조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 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재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운영주체)	신청단위 [] 지자체, [] 법인, [] 단체		
	사업장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참여 농가 수
	주소 (위치 요약) (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 주관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 / 직위: 성명: 전 화 번 호:		

당초 신청내용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주요품목		

재심사 신청내용	재심사 신청 항목		
	재심사 신청 사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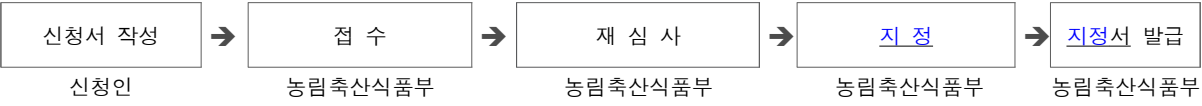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운영주 체)	신청단위 [] 지자체, [] 법인, [] 단체		
	사업장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참여 농가 수	
	주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 주관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 / 직위: 성명: 전화번호:		

변경 내용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변경 전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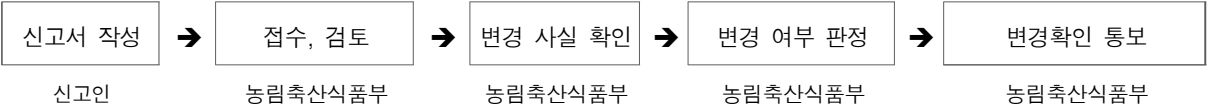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내용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서 사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처리절차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변경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신청단위	[] 지자체, [] 법인, [] 단체		
	사업장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참여 농가 수		
	주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 주관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 / 직위: 성명: 전화번호:			

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 지정사업자 변경		
	[] 지정사업장 소재지 변경		
	[] 지정사업장 규모 변경		
	[] 지정사업장 명칭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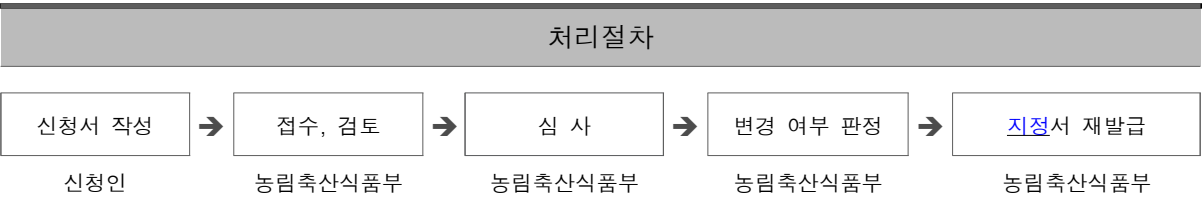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변경지정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서 원본 2.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개월
------	-----	-----	------	-----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2. 사업계획서 3. 시설명세서 4.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5. <u>지정</u> 업무 규정	수수료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	검토 및 심의 농림축산식품부	→	결재 농림축산식품부	→	<u>지정</u> 기관 지정서 발급 농림축산식품부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지정번호: 제 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3. 소재지:
4. 지정업무의 범위:
5. 유효기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 인

210mm×297mm[백상지 150g/㎡]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296